

1. 개정이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신청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도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신체검사 통보자료 정비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 등 규정(안 제8조의5, 별지제9호의2 신설)

신체검사에서 시행한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도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상이등급 심사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소견서, 작성자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8조의6,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함

라. 이자가산 등 환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안 제16조의6, 별지 제55호의6 신설)

마. 관절강직의 정도 등 장애 측정방법 정비(안 별표 4 제7호가목, 제8호가목)

1) 근육의 마비,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판정

2)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인정

3) 팔 및 다리의 길이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개선

바.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및 특별고용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및 별지 제34호 서식)

취업지원기관 실태조사 시 제대군인법상 방위산업체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 통보 서식에 미선정 대상자에 대한 불합격 사유 별도 첨부 안내

사.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별지 제13호의2 및 제4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람”을 각각 “사람(법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를 “작성하고 신체검사에서 시행한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제9호의2서식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 등 신체 상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견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

다.

④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는 관계규정에 따라 신체상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확인,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8조의6 중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별표 5의5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제8조의7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상 변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자임”을 “치른 사람임”으로, “하는 자”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를 “등본(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을 “이에 동의하지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변동 신고”를 “변동신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변동 신고”를 “변동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본의 내용(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를 “등본(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을 “이에 동의하지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 해외”를 “사람이 국외”로, “해외

거주사실”을 “국외거주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자부”를 “며느리”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인”을 “사람인”으로 한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95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4 제7호가목2) 본문의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7호가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팔의 길이는 스캐노그램(scanogram)검사로 견봉에서부터 중지끝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7)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별표 4 제8호가목2) 본문의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

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8호가목5) 전단 중 “단순방사선사진으”를 “스캐노그램(scanogram)검사”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신체검사 결과”를 “상이등급 판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사일”을 각각 “판정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의 5, 제16조의6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32호, 별지 제34호의 개정 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공상 등 내용	질병명 (병명)		부상(발병)일	. . .
			장해진단일	. . .
	※ '질병명(병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공무원연성,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인정받은 질병을 의미함 ※ '장해진단일'은 '질병명(병명)'에 대한 장해상태의 진단일을 의미함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장해내용 및 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기재, 필요한 경우 도표·그림으로 표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신체부위별 소견서)에 상세히 기재
※ 상이등급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직인

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진단의사는 상기 질병명(병명)에 대하여 장해진단,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발행 시 신분증과 대조하여 진단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견서에 기재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주요 검사항목을 참고·실시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소견서, 주요 검사자료 등 사후 확인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협의자	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2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5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본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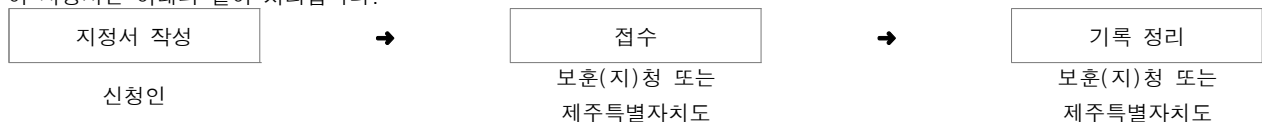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협의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방법	1.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2.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 유족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자녀 - 손자녀(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며,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유족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5세 미만 자녀(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25세 미만 자녀의 예에 따름) - 부모 -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3.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협의 지정자와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①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 지정자와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②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합니다. 협의 지정자와 생활수준에 따른 지정자도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으로 보상금을 받을 손자녀를 지정합니다. 4.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지정방법 중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합니다. 다. 외국에 거주중인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및 협의자의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이 지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지급구분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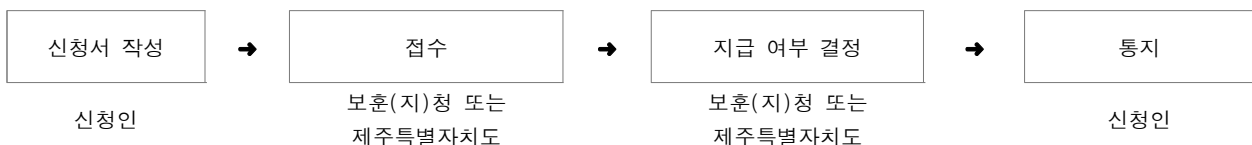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		
			-		
			-		
신청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수수료 없 음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통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이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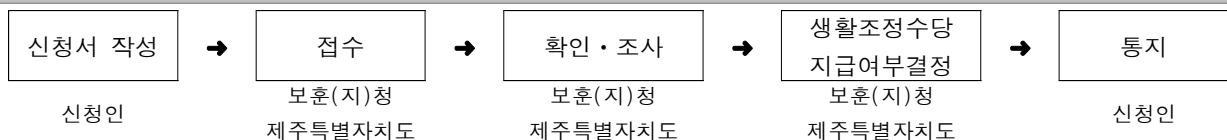
- 본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신청자격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5. 자활근로자확인서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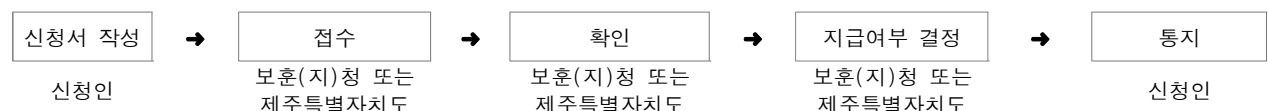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망일시금 ☐ 미지급 보훈급여금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구분 []사망 []행방불명		신상변동일	
신청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보훈급여금 미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
한
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로서 장례를 행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로서 장례를 행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망일시금 또는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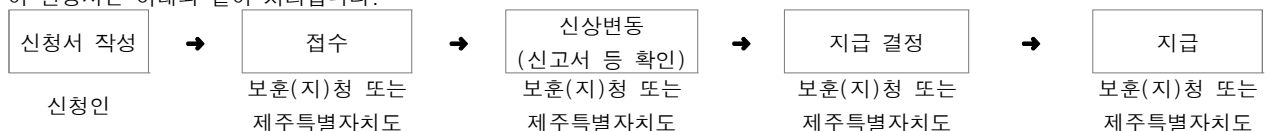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지급받을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	☐ 보훈급여금		☐ 학습보조비
	☐ 능력개발 장려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기타()		
지급구분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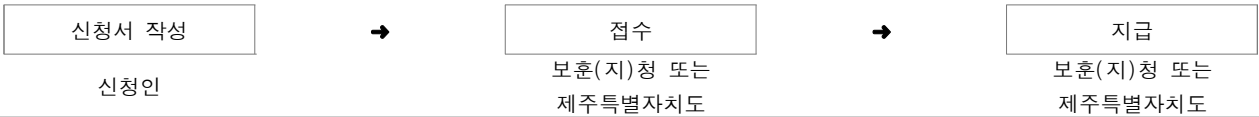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변경구분	☐ 예금계좌 변경		금융기관명
	☐ 계좌입금으로 변경		
	☐ 압류금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로 변경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으로 변경		
변경지급 희망시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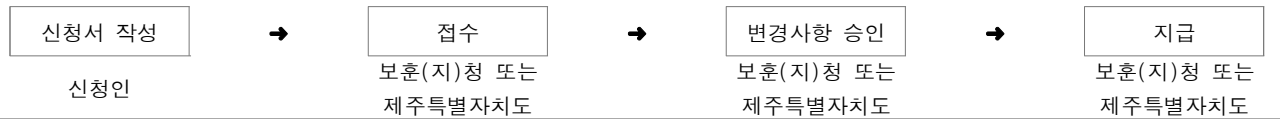
본인은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월부터 월까지 (월간)	
대리 수령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호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대리수령 지정기간 월부터 월까지 (월간)		
대리 수령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업체(사립학교)명

(뒤 쪽)

(5) 방위산업체 방산분야 지정인원											
구분	가 합계 ①~⑧	① 사무	② 기술	③ 생산	④ 경비	⑤ 노무	⑥ 영업	⑦ 서비스	⑧ 기타		
방산분야 지정인원											
(6) 방위산업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구분	가 합계 ①~⑧	① 사무	② 기술	③ 생산	④ 경비	⑤ 노무	⑥ 영업	⑦ 서비스	⑧ 기타		
직종별											
특수직종 별	가 합계	① 운전 및 운송관련직	② 기계 관련직	③ 전기·전자 관련직	④ 정보통신 관련직	⑤ 화학 관련직	⑥ 총기류제조 및 장비관련직	⑦ 군용장비제조 및 장비관련직	⑧ ...		
(7) 채용된 취업지원대상자 명단											
순번	보훈 번호	유공자 와의 관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학력	직종	월임금 (천원)	채용 연월일	고용 형태	비고 (취업방법)
1											
2											
3											
1. 월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2.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구분하여 기재 3. 명단 기재란 부족 시 별지를 사용하고 ※란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제대군인 특수직종은 국가보훈처 고시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참고 5. (5)(6)번은 방위산업체만 작성											
※ 보훈관서 검토 및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비공개(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선정 대상자 (합격자)	보훈 번호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계	명			

※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선정대상자가 없는 경우 포함) 미선정 또는 불합격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대부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 신청	대부종류	[] 주택구입 [] 주택신축 [] 주택임차 [] 주택개량 [] 농토구입 [] 사업 [] 생활안정 [] 대지구입	
	희망금액	만원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기타
주거상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

본인은 위의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 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대부 여부 결정	→	대부계약
신청인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환수금액 원	일시납부 금액 원	분할납부 신청 금액 원	분할납부 횟수 회	월 납입일 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후단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①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①총 환수금액 = ②일시납부 금액 +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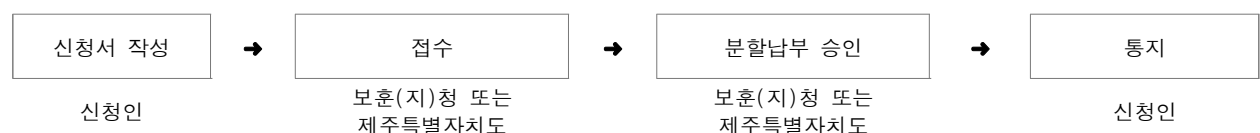
나.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반납해야 할 금액이 ①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②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③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u>사람</u> 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 ----- <u>사람</u>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u>사람</u> 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사람</u>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 -----.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국가보훈 장애인단서 등) ① ----- ----- ----- ----- ----- ----- -----작성하고 신체검사에서

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시행한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
을 첨부하여-----.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
보훈 장애인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제9호의2서식의 국
가보훈 장애인단서에 방사선 검
사자료, 진료기록 등 신체 상이
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발급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 장애인단서의 구체
적인 장애상태는 국가보훈부장
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견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 장
해진단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 장애인단서와 소견
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
성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
의는 관계규정에 따라 신체상이
에 대하여 진료기록 확인, 객관
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국가보

<신 설>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영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훈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진료 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 필요 서류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 신청서를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신 설>

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9(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별표 5의5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
호의7서식의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
급자는 제8조의7에 따라 생활조
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 또는 같은 법 제7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
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
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
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례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 사람은 ----

-- 제출해야 ----.

1. -----
----- 신상변동 -----

2. -----

----- 상속인-----

3. ---- 치른 사람-----

----- 행하는 사람-----

② -----
----- 「전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① -----

--- 사람은 -----

----- 제출해야 -----.
1. ----- 사람이 ---

가. -----
----- 변

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 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동 신고 -----

나. -----

----- 상

속인이 될 사람으-----

2. ----- 사람이 --

----- 변동

신고 -----

② -----

----- 등본(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

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②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
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
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
다) 1부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
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
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포함한다)-----

-----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

----- 사람은 -----

----- 제출해야 -----

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u>자가</u> <u>해외</u>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u>해외거주사실</u>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u>자의</u>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u>자부</u>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u>자와</u> 동거하고 있는 <u>자인</u>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	--. 1. ----- <u>사람이</u> <u>국외</u>----- ----- <u>국외거주사실</u>----- 2. ----- ----- ----- ----- ----- <u>사람의</u> ----- ----- <u>며느리</u> ----- ----- <u>사람과</u> ----- <u>사람인</u> -- ----- -----
<신 설>	<u>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u> <u>영 제95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